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 정관 제 49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 2 조(회원가입) 정관 제 6조에 의한 정·학생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초년도회비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회비) 각종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1)정회원 10,000원 2)학생회원 5,000원
2. 연회비 1)정회원 50,000원
2)학생회원 15,000원
3)도서관회원 100,000원
4)단체회비 (특별회원)
특급 : 년 5,000,000원 이상
1급 : 년 3,000,000원 이상
2급 : 년 1,000,000원 이상
3급 : 년 500,000원 이상
4급 : 년 300,000원 이상
5) 찬조회비 50,000원 이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
3. 논문집 구독회비
1) 국문논문집 : 30,000원

4. 종신회원

해당년도 정회원의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불하는 회원은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한다.

5. 명예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그리고 정회원 또는 참여회원으로서 만65세에 달한 회원, 또는 30년 이상 연회비를 납입한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6. 각종 회원의 회비납부 기간은 당해년도 3월말일까지로 한다. 정회원은 회비 납부를 통지하여 4월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6월호부터 학회지 송부를 중단한다.

7. 입회금 및 연회비의 인상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4 조(자격의 변경) 학생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그 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신규 입회시에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입회금의 재납입은 요하지 않는다.

제 3장 회 무

제 5 조(회무의 분담)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기획, 사업, 학술, 기술, 국제협력, 운영 및 회원협력 전담부회장을 두어 소관회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제 6 조(전담부회장의 선임) 부회장의 전담분야는 회장이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 조(기획전담부회장) 기획전담부회장은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1.본회의 기획에 관한 사항
- 2.정관, 규칙, 규정, 기타 법규에 관한 사항
- 3.관련 학회, 협회 및 시민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표창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5.학회의 홍보 및 계몽활동에 관한 사항
- 6.기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기타 타 분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 8 조(사업전담부회장) 사업전담부회장은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1.산, 학, 연, 관 간의 상호유대와 용역에 관한 사항
- 2.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기타 기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출판 및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 4.사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기타 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제 9 조(학술전담부회장) 학술전담부회장은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1.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학술용역 집행에 관한 사항
- 2.학술발표회와 특별학술세미나를 포함한 연구발표회, 강연회에 관한 사항
- 3.학술좌담회의 개최와 견학, 시찰에 관한 사항
- 4.학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학회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논문집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영문논문집(JHER)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제 10 조(기술전담부회장) 기술전담부회장은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1.기술 및 기술개발 활동과 기술용역 분야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기술개발 사례발표회, 강연회에 관한 사항
- 3.수공기술관련 정책제안, 특별기술세미나, 해외전문기술에 관한 사항
- 4.수공기술에 관한 설계기준, 시방서에 관한 사항
- 5.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기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 11 조(국제협력전담부회장) 국제협력전담부회장은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1.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 2.국제학회 교류에 관한 사항
- 3.교류협력국가내 관련분야 전문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4.국제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 12 조(운영전담부회장) 운영전담부회장은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1.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 3.예산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 13 조(회원협력전담부회장) 회원협력전담부회장은 다음 회무를 주관한다.

- 1. 지회 설치, 활성화,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2.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3. 회원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기타 회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 14 조(사무국) 사무국의 직제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5장 회 의

제 15 조(이사회) 이사회는 3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하되 회무 수행상 필요할 때는 임시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에 결석하는 이사는 출석 이사에게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때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6 조(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회장이 되며 주요 회무를 처리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간담회) 간담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정회원, 고문 및 참여회원 중에서 저명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회장이 되어 학회의 기획, 사업, 학술, 기술, 국제협력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토의하며 간담회 결과를 회무에 반영한다.

제 18 조(회의록) 회의록을 작성, 등기이사 서명 날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6장 위 원 회

제 19 조(상설위원회) 본회에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 1.기획위원회
- 2.사업위원회
- 3.학술위원회
- 4.기술위원회
- 5.국제협력위원회
- 6.운영위원회
- 7. 회원협력위원회
- 8. 편집위원회
- 9. 학술발표회 준비위원회

제 20 조(기획위원회)

가.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전담부회장이 되며 전담이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나. 기획위원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본회 기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 회무기획분과위원회
2. 홍보분과위원회

제 21 조(사업위원회)

가. 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전담부회장이 되며 전담이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나. 사업위원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본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사업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 산학연관협력분과위원회
2. 출판분과위원회

제 22 조(학술위원회)

가.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전담부회장이 되며 전담이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나. 학술 위원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학술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1. 수문분과위원회
2. 수리분과위원회
3. 수자원분과위원회
4. 물환경생태분과위원회
5. 상하수도분과위원회
6. 해안분과위원회
7. 방재분과위원회
8. Hydroinformatics분과위원회
9. 특별학술세미나 준비위원회

제 23 조(기술위원회)

가.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전담부회장이 되며 전담이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나. 기술위원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기술 및 기술개발활동을 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기술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1. 설계기술분과위원회
2. 기술정책분과위원회
3. 수공기술교육분과위원회

제 24 조(국제협력위원회)

가. 국제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협력전담부회장이 되며 전담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나. 국제협력위원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본회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 국제기구협력분과위원회
2. 국제학회교류분과위원회

제 25 조(운영위원회)

- 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전담부회장이 되며 전담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회장이 위촉한다.
- 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본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1. 총무분과위원회
 - 2. 재무분과위원회

제 26 조(회원협력위원회)

- 가. 회원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협력전담 부회장이 되며, 전담이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회장이 위촉한다.
- 나. 회원협력위원회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본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회원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1. 지회협력분과위원회
 - 2. 여성위원회
 - 3. 회원관리분과위원회

제 27 조(편집위원회)

- 가.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위원회로 구분 운영하며 학회지 및 논문집을 편집한다.
 - 1. 학회지 편집위원회
 - 2. 수자원정책비전 편집위원회
 - 3. 논문집 편집위원회
 - 4. 영문논문집(JHER)위원회
- 나. 논문집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연구윤리규정은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 다. 학회지, 수자원정책비전, 논문집 편집위원회 및 영문논문집(JHER)의 위원장은 학술전담부회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제 28 조(학술발표회 준비위원회)

학술발표회 준비위원회는 학술발표회의 일정 및 추진계획과 전반적인 행사를 주관한다. 준비위원장은 학술전담 부회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준비위원장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 29 조(특별 및 임시 위원회)

학회의 회무 및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및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0 조(위원회 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1 조(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기획, 사업, 학술, 기술, 국제협력, 운영, 회원협력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매 회기 초에 사업계획서를, 회기 말에는 결과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구

제 32 조(사무국)

가.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직인관리 및 법인체 사무
2. 문서접수, 발송 및 보관
3. 회원파악, 회원연락 및 회비징수
4. 총회 및 평의원회, 이사회 등의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보관
5. 재산관리
6. 회계업무
7. 학회지, 논문집, 회원명부 및 용역보고서 발행에 관한 사업
8. 도서관리
9. 해외기술교류촉진 사무
10. 회지원고자료 수집 및 편집 교정에 관한 업무
11. 학술, 기술 및 회원신상 상담에 관한업무
12. 산업시찰에 관한 사무
13.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무
14. 기타 학술, 기술 전반에 관한 사무

나. 사무국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1. 현금출납부 및 입출금전표철
2. 회원기록부, 회원명단 및 임원명단
3. 도서목록대장
4. 재산목록대장
5. 회비관리대장
6. 이사회회의록, 평의원회회의록, 총회회의록
7. 문서수발부
8. 관계법규철
9.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정기간행물 등록과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 관계철
10. 건의문관계철
11. 업무일지

제 8 장 회계 및 재무

제 33 조(재산의 관리의 평가)

가. 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나.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다. 기본재산의 처분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회계)

가. 이 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나. 회계를 담당하는 자는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학회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 35 조(기금과 적립금)

가. 기금과 적립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고 지출결산은 총회에 보고한다.

나. 기금 및 적립금의 관리, 지출 그외 일체의 처리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본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다만, 경미한 통상업무에 관하여는 전결 규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3. 이사회 운영규정(한수학 규정 제1호)과 총회 운영규정(한수학 규정 제3호)은 이를 폐기한다.
4. 본 규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197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198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199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199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1997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200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200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200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200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승인의결한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회에서 승인의결한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평의회에서 승인의결한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